

#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3년 3월 21일  
의회 운영 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3월 10일, 고성미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3월 10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  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(2023년 3월 21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고성미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의정모니터의 활동 지원을 위한 실비보상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「가. 실비보상 조항을 신설함(안 제10조 신설).
-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하도록 정함(안 제11조 신설)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해촉) ① (생략)	제6조(해촉) (현행 제1항과 같음)
<u>&lt;신설&gt;</u>	<u>제10조(실비보상 등) 의장은 의정 모니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원고료 등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u>
<u>&lt;신설&gt;</u>	<u>제11조(운영규정) 이 조례에 규정 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</u>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김하영

나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의 활동 지원을 위한 실비보상 등을 규정함으로써 의정모니터의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임.
- 주요 개정사항으로는,
  - 안 제10조에 실비보상 조항을 신설하고,
  - 안 제11조에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하도록 규정함.
- 이는 모니터 활동 지원에 필요한 원고료 등의 실비보상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의정모니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의정모니터의 역량 제고 및 전문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-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,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, 구의회의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